

製造物責任法の 判例分析

韓 三 寅*

目 次

- I. 序 說
- II. 判例分析
- III. 結 論

I. 序 說

소비자주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지 만 2년이 지났다¹⁾.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대내적으로는 제품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전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다 할 것이다. 한편,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공작물책임의 법리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공작물의 개념이 좁기 때문에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점을 충족시켰다는 법적인 의미도 있다.

제조물책임의 입법태도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독립한 특별법의 형태를 취하는 입법주의(독일·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 둘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로 규정하는 국가(영국·브라질), 셋째 민법전에 규정하는 국가(프랑스·네델란드)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첫째 유형에 속한다. 다만,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의 성격((민사특별법)을 가짐(제8조)과 동시에 결합 있는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민법/환경법)

1) 2000년 1월 12일(법률 제6109호)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2년 6개월의 주지기간을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원산지인 미국에 있어서 불법행위법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1965, §402 A)가 제정된지 37년만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Directive o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Council Directive 85/374, 25. 7. 1985)이 제정된지 17년만에 시행에 들어간 셈이다.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의 성격도 갖고 있다 할 것이다²⁾.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은 이에 관한 선진입법(가령 미국 불법행위법 제2차 및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EC지침, 독일법, 일본법 등)을 모방하였을 뿐 아니라, 독특한 제도(가령 제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제조업자측의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두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의 흠결은 민법에 의해 보충을 해야 하고, 특히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없는 일종의 “司法法”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법해석(판례)이 중요한 法域이라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의 대상·결함제조물의 판단기준·입증책임 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제조물책임법 또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를 음미·검토해 봄으로써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적 과제를 모색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II. 判例分析

1. 제조물책임의 의의

(1) 관련 판례

① 제조물책임의 개념 등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스토어(노래방 기기 중 본체)나 노래방기기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위 노래방기기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게 제조물책임을 묻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³⁾.

2) 같은 견해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저스티스』 제68호, 한국법학원, 2002. 8. 6면.

3) 大判 1999. 2. 5. 97다26593.

(2) 검토

(공업)제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야기된 생명·신체·재산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침해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그 제조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 한다⁴⁾. 제조물책임은 확대손해의 발생·피해자의 광범성·가해자의 복수성 등의 특성이 있어서, 그로 인한 소송은, 분쟁의 복잡화·전문화·거대화 등의 특징을 갖는 현대형 소송의 영역에 포함된다⁵⁾.

판례는,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으로 파악한다. 당해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만이 발생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될 뿐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⁶⁾. 이와 같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조물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한가. 제조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순수한 경제적 손해)의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법리를 통하여,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들 사이에서는 일반불법행위법에 의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다⁷⁾는 점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판례⁸⁾의 태도를 받아들여,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제조물책임으로 정의한다(제3조 제1항).

4) William L. Prosser, 「Law of Torts」, West publishing company, 1980, p. 641.

5) 新堂幸司, “現代型 訴訟とその役割”, 「民事訴訟制度の役割」, 有斐閣, 平成5年, 291면; 田徹一郎, 「民事訴訟法」, 法學書院, 2001, 231-234면

6) 제조물(물건)의 하자란, 물건의 '상품적합성의 결여'를 뜻한다. 어떤 물건이 그 물건에 통상 기대되는 성질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그 물건의 매수인의 이용상 이익의 상실·감소 내지는 상품의 가치감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韓三寅, “製造物責任”, 「考試界」, 考試界社, 2004. 4, 86면.

7) 구입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제품의 하자를 입증함으로써(매도인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제575조). 피해자가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피해자가 가해자인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의 경우, 피해자는 제조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함으로써 제조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8)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양계사료 사건'이다(大判 1977. 1. 25. 75다 2092).

2. 제조물책임의 대상과 그 주체

(1) 관련 판례

① 제조물의 상품적합성 결여로 인하여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하는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⁹⁾”.

(2) 검토

판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기타 제조물 자체 이외의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제조업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으로 파악함으로써 제조물의 ‘상품적합성 결여’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만 성립할 뿐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제조물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 제조업자 이외의 자가 책임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물책임의 대상(제조물의 범위)과 그 책임 주체가 밝혀져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제조물로 정의한다(제2조 제1호).

책임주체인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표시 또는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로 규정한다(제2조 제3호).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판매업자·제조업자에게 그 책임이 확장된다’는 태도를 취한다¹⁰⁾(제3조 제2항 참조).

9) 大判 2000. 7. 28. 98다35525; 大判 1999. 2. 5. 97다26593; 大判 1992. 11. 24. 92다18139.

10)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결함 제조물의 제조자 뿐만 아니라, 그 공급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급자책임(Supplier's Liability)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의

제조물책임법상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제조물의 범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밝히는 문제, 그 책임주체의 명확화의 문제 등은 '법상실적 권능'을 부여받은 법원의 법 해석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본다. 부동산이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미가공자연산출물과 무체물이다. 농·축·임·수산물과 같은 자연산출물을 1차적으로 가공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가공 동산으로서 당연히 제조물 책임이 인정된다. 위의 미가공자연산출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¹¹⁾. 제조물책임은 공산품의 안전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연혁적 측면과 영세한 제1차 생산업의 보호 및 미가공자연산출물은 자연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고도로 가공된 공업제품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미가공자연산출물을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TO 체제 아래에서 미가공자연산출물(특히 농산물)이 자유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다른 재화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수입농산물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농약·인공사료·성장호르몬 등의 대량사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유전자공학의 발달로 생산된 복제농산물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자연산출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래사회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미가공자연산출물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에 서술된 조리법이나 물건을 만드는 방법 등의 정보는 물건이 아니고 단순한 서비스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는 무체물로서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정보가 저장된 하드 디스크·IC칩 등은 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¹²⁾. 혈액제제의 경우는 어떤가. 사람의 혈액을 별도의 가공처리 없이 수혈을 목적으로 채혈하여, 그대로 제공하는 전혈제제는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¹³⁾. 따라서, 수혈을 받은 환자에게 신체상의 위해가

규정상 전혀 가공되지 않은 자연적 생산물의 결합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생산물책임·생산자책임의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 金相容, 『債權各論(改訂版)』, 法文社, 2003, 799면.

- 11) EC지침은 미가공자연산출물의 경우, 제조물책임의 적용 여부를 개별 국가에 일임함으로써 미가공자연산출물을 포함하는 국가(룩셈부르크·프랑스·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스웨덴 등)와 포함하지 않는 국가(영국·그리스·이태리·덴마크·포르투갈·스페인·독일·네델란드·벨기에·아일랜드·오스트리아·러시아·리히텐슈타인·스위스·헝가리 등)로 나뉜다.

松本恒雄, “製造物責任の現象と課題 4. 製造物”, 『NBL』 NO.457, 1990, 37면.

- 12) 가령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장치를 한 전기제품 등의 경우, 프로그램의 오작동 등의 결합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Rolland, Walter, 『Produkthäftungsrecht』, 1990, S. 349ff.

- 13) 프랑스의 경우, 혈액·혈장이나 장기 등과 같은 인체의 일부분이나 인체로부터의 추출물에 대해

생긴 경우,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문제가 될 것이다¹⁴⁾. 한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혈장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알부민제제를 생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회사가 제조물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¹⁵⁾.

둘째, 책임주체의 경우를 간단히 본다. 제조물책임법상의 1차적인 책임주체는 제조업자(제조·가공·수입업자, 표현제조업자)이고, 판매업자·공급자는 2차적으로 보충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주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넓히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은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로서,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결함 제조물의 대여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제3조 제2항 참조). 요컨대 결함 제조물의 임대업자도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1) 관련 판례

①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여도 제조물책임을 적용한다(프랑스민법 제1386조의 12 제1항).

- 14) 그 이론구성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및 환자의 승낙권 침해 등의 범리구성이나, 혈액채혈자측의 에이즈 감염의 결과발생을 회피할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에이즈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피고(대한적십자사)는 1986년 1월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혈액을 채혈할 당시에 혈액의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구체적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채혈일로부터 소외 망인이 수혈을 받은 1987년 1월초경 사이에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된 내국인의 수는 5명 정도에 불과하여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헌혈 혈액 전부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데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피고로서는 헌혈 혈액 전부에 대하여 당시 실행 가능했던 최선의 조치로 판단되는 에이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에이즈 감염의 결과를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소론 주장과 같이 혈액관리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헌혈 혈액 전부에 대한 에이즈 검사가 의무화 된 시점이, 이 사건 혈액의 채혈일 이후인 1987년 7월 1일부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大判 1995. 8. 25. 94다47083.

- 15) 같은 견해 최승재, “製造物責任法の 적용대상의 확정에 관하여”, 『人權과正義』, 대한변호사협회, 2002. 11. 48-49면.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¹⁶⁾”.

(2) 검토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생긴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판례는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과실책임주의’에서 벗어나 ‘결함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무과실책임주의’(no-fault liability) 내지 영미법상의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판례가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결함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제조물책임의 세계적 입법추세¹⁷⁾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은 종전의 판례 영향을 받아, 그 성립요건으로서 ‘결함책임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구성이 가능하다. 물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등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입증책임의 문제는 나중에 보기로 한다).

가. 결함의 유형과 판단기준

(1) 관련 판례

①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¹⁸⁾.

16) 大判 2004. 3. 12. 2003다16771; 大判 2000. 2. 25. 98다15934; 大判 1992. 11. 24. 92다18139; 大判 1977. 1. 25. 75다2092.

17) 가령 미국의 불법행위법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1965) 402 A 물과 그 영향을 받은 EC지침(1985) 제6조, 일본 제조물책임법(1994) 제1조·제2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18) 大判 1992. 11. 24. 92다18139.

② 점진적인 절연열화로 변압변류기가 폭발한 사고에서 변압변류기의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변압변류기의 점진적인 絶緣劣化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내구연한이 기사용기간을 초과한다면, 내구연한 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⁹⁾.

③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²⁰⁾”.

④ 자동차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사고에서 대체설계 미채용에 의한 설계상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엑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後略²¹⁾”

⑤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19) 大判 1992. 11. 24. 92다18139.

20) 大判 2003. 9. 5. 2002다17333.

21) 大判 2004. 3. 12. 2003다16771; 大判 2003. 9. 5. 2002다17333.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²²⁾”.

⑥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및 그 결함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²³⁾”.

(2) 검토

먼저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의 개념과 그 유형을 본다. 결함이란,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그 유형으로는 첫째, 제조상의 결함으로서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²⁴⁾(제2조 제2호 가 목). 둘째, 설계상의 결함으로서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²⁵⁾(제2조 제2호 나 목). 셋째, 표시상의 결함으로서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

22) 大判 2003. 9. 5. 2002다17333.

23) 大判 2004. 3. 12. 2003다16771; 大判 2003. 9. 5. 2002다17333.

24) 제조물의 설계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제조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동일한 설계하에 제조된 제품의 일부에 결함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충분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제조상의 결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식중독사건 등이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5) 설계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하거나 결여된 경우에 발생하는 제조물의 결함이다. 제조상의 결함과는 달리, 동일 설계하에 제조된 제조물 전체에 같은 종류의 결함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서, 그 피해가 대규모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상의 결함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 이전에 試作·반복시험·모니터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게 된다.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²⁶⁾(제2조 제2호 다목). 넷째,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제2조 제2호 후단)로서 이는 '소비자기대기준'을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 하지 않고 추상적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다. 이 점은 과실의 정의에 관한 민법의 태도와 같다 할 것이다. 결함을 세 가지로 유형화 하고 있으나, 결함의 기준과 결함의 유형을 혼용하고 있을 뿐, 그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²⁷⁾. 결국 제조물의 결함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가령 제조물책임법이 설계상의 결함에 관하여 '합리적 대체설계'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의 합리적 대체설계의 판단기준은 법원의 몫이다)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상의 결함은, 제품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경우이므로, 그 판단기준은 제조자의 설계사양이 될 것이다. 1992년의 '변압변류기 사건'에서, 대법원은 절연연화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 표준일탈기준을 취했는지, 소비자기대기준을 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법원은 향후의 판결에서 제조자의 설계사양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설계상의 결함의 경우에도, 1992년의 '변압변류기 사건'에서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그 의미를 파악한다.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은 그 후의 판결에서도 계속 채택되고 있다. 그런데,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은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된다. 이 점은 제

26) 제조물의 사용에 관한 설명서나 경고표시(설명이나 경고 등은 가령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담배갑의 표시를 '폐암의 원인이 된다'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하여야 한다)가 불충분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시 또는 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27)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결함의 판단기준 세 가지를 본다. 첫째, 표준일탈기준(norun deviation test)으로서 '제조자가 의도했던 방식이나 설계에서 일탈된 경우,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과거에 제조상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둘째, 소비자 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으로서 '매매된 제품이 평균적·일반적인 소비자가 생각하는 안전성 정도를 넘어 위험한 것이면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제조상의 결함에 사용되고 있으나, 결함의 판단기준으로서 그 기준이 주관적이고 애매하다 할 것이다. 셋째, 위험·효용기준(risk-utility test)으로서 '제조물의 위험성과 효용성을 비교하여 위험성이 효용성을 능가할 경우,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결함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현재 미국 법원의 지배적 견해이다.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Product Liability, 1998, 44ff.

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인 2004년의 '자동차급발진 사건'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초기의 우리 판례는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이 미국법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비자기대기준'인지, '위험효용기준'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한 '합리적 대체설계'의 판단기준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²⁸⁾으로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판례가 축적되면서 사안에 합당한 판단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시(지시·경고)상 결함의 경우, 우리 판례는 1979년의 '서울적십자병원 질소통 사건'²⁹⁾에서, 질소통이 외관상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도색·문자화된 경우, 질소통 공급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경고결함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경고상 결함의 경우, '적절한 경고'(adequate warning)를 하였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즉, 제품의 사용설명서(제품의 외각)에 제품이 갖는 위험성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거나, 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포괄적이어서 소비자가 위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이나가 된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적절한 경고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적절한 경고'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성'(specificity: 제품이 갖는 위험의 존재와 본질을 특정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과 '강열성'(intensity: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하여금 제품이 갖는 위험에 대비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³⁰⁾는 것이다. 가령 '약품의 부작용에 관하여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은 부적절하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경고를 했을 때 '특정성'과 '강열성'을 구비한 '적절한 경고'가 된다³¹⁾는 것이다.

28) 법원이 설계상의 결함 여부를 인정하는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기업이 어떤 설계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험효용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든지, 특정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동불량형태 및 효과분석'(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MEA)을 실시하지 않았든지, 설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스크린하는 '설계검토'(design review) 절차를 밟지 않았든지, 소비자의 예견가능한 오사용(foreseeable misuse)에 대비한 설계를 하기 위하여 '인간공학분석'(human factors analysis)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

하종선,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2.8, 23면.

29) 大判 1979. 3. 27. 78다2221.

30) Bituminous Casualty Corp. v. Black & Decker Mfg. Co., 576 S.W. 2d 868, 1974.

31) MacDonald v. Ortho Pharmaceutical Corps, 475 N. E. 2d. 65, 198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최근 판례는 표시상 결함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제품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게 의한 위험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법원이 EC지침과 일본 제조물책임법³²⁾을 원용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입증책임

(1) 관련 판례

①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결함의 존재·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는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32) EC지침은 결함을, ‘제조물의 표시·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조물의 사용·제조물이 유통된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로 파악한다. 일본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물의 특성·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金相默, “製造物責任法の 問題點”, 『中央法學』, 中央法學會, 2003, 185면.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³³⁾”.

②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의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後略³⁴⁾”

(2) 검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그 결함과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량생산을 이상으로 하는 제조물의 생산과정은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결함·인과관계의 존재)을 자연과학적 수준에서 엄밀히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이론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 ‘그 전환’이 그것이다. 이는 판례의 몫이다.

첫째, 판례는 2002년의 ‘삼성TV 화재사건’에서부터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인 최근까지 현대형 소송(특히 환경오염책임소송·의료과오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배타적 지배영역설’의 개념(이는 사실추정칙³⁵⁾과 위험영역설³⁶⁾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33) 大判 2000. 2. 25. 98다15934.

34) 大判 2004. 3. 12. 2003다16771.

35) ‘過失推定則’(res ipsa loquitur: the thing speaks itself<사물 그 자체를 증명한다>)은 영국에서 1863년의 Byrne v. Boadle(2H. & C. 722)에서 최초로 사용된 후 미국에 계수되어 미국판례법상 큰 획을 긋고 있다. 그 요건을 보면, ‘당해 사고가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보통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을 것, 그 사고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 또는 물적 시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것, 원고측의 자발적인 행위로 인한 과실의 경합이 없을 것, 그 사고의 내용을 해명할 수 있는 증거가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더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보인다)을 사용하여 결함제조물의 피해자를 보호하려 한다(관점에 따라서는 '一應의 推定の 法理'에 의하여 제조업자측의 과실 및 결함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한다는 이론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즉, '어떤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입증책임을 다 한 것이 되어, 제조물의 결함과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자측에서 반증을 통해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타적 지배영역설에 의해 피해자의 보호가 가능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³⁷⁾이 있다. 즉, 제조업자측에서 어느 정도로 영역을 지배해야 '배타적 지배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제조자 이외의 제3자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만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개입이 있어도 제3자의 개입정도가 상당하지 않다면, 여전히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점은 앞으로의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미국의 불법행위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³⁸⁾에서 취하고 있는 '정황증거설'³⁹⁾에 의한 입증책임의 전환(결함의 추정)이다. 이는 우리 판례가 1977년의 '경향사료 사건'⁴⁰⁾에서 채택한 바가 있으나, 계속 이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다(William L. Prosser, Handbook of Law of Torts, 4ed., 1971, p. 214.)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면, 사고의 발생 그 자체가 피고의 과실에 대한 추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실추정칙의 효과로서 입증책임이 전환하는지, 입증의 필요만이 전환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吳錫洛, 新版「立證責任論」, 博英社, 1996, 201면을 참조할 것). 어떻든 영미법상의 '과실추정칙'은 '一應의 推定の 法理'(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어 반증이 없는 한, 가해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론을 말한다)와 같다 할 것이다.

36) '危險領域說'(Gefahrenbereich)은 독일연방대법원(BGH)의 판례에 의해 승인되고 있는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수정이론 중의 하나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吳錫洛, 新版「立證責任論」, 博英社, 1996, 82-85면을 참조할 것.

37) 같은 견해 하종선(2002), 27면.

38)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Product Liability, 1998, pp. 114-115.

39) 제조물의 결함이 사고발생의 유일한 원인임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정황증거에 기하여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앞에서 본 '배타적 지배영역설'의 경우, 결함 제조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제조자의 지배영역에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제조물의 결함이 사고발생의 유일한 원인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情況證據說'은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40) '피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사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정황상의 사정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였다.

셋째, 제조물책임소송의 경우, 증거의 피고에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원고의 증명궁핍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증거와의 거리이론'⁴¹⁾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론은 어떤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에 가까운 자가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수정이론 중의 하나이다. 제조물책임소송의 특징상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우리 판례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이 이론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면책사유

제조업자 등의 면책사유와 관련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규정내용⁴²⁾ 중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요한 것은, '개발위험의 항변'(development risk: 제4조 제1항 제2호)·'강제규정 준수의 항변'(제조물의 공급당시의 법령을 따랐다는 항변을 말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과 면책사유의 배제에 관한 '제조물계속감시의무'(Produktbeobachtungspflicht)의 부과이다(제4조 제2항).

'개발위험의 항변'이란, 제조물 공급시점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제조자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제조자에게 인정되는 항변사유를 말한다⁴³⁾. '개발위험

大判 1977. 1. 25. 75다2092.

41) 이는 일본의 石田穰이 주장한 견해로서, 흔히 '石田說'로 불리운다. 즉, 원고가 어떤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유하거나 보유하기 쉬운 입장에 있는 반면, 피고는 그러한 증거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경우, 원고가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는 달리 피고가 어떤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유하거나 보유하기 쉬운 입장에 있는 반면, 원고는 이와 다른 입장에 있을 경우, 피고가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吳錫洛(1996), 84면 참조.

42) (1)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 네 가지를 면책사유로 규정한다(제4조 제1항).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제4조 제2항). (3)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

43) 각국의 입법추세(가령 EC지침 제15조 제2항,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2항 제5호, 일본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등)를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이 받아들인 것으로서, 주로 의약품에서 제기된 항변사유라 한다.

한봉희, "새롭게 맞게 된 제조물책임법 시대", 『JURIST』, 청림출판, 2002. 6. 21면.

의 항변'은, 제조업자 등의 제조물책임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의 경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나아가 제조물 공급당시의 과학기술의 수준정도가 책임인정 여부를 결정짓게 되므로,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제조물의 유통 후에도 제조업자 등에게 계속적으로 관찰의무를 부과한 '제조물계속감시의무'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제조업자 등은 면책사유를 주장·입증하여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고, 반대로 결함 제조물의 피해자는 제조업자 등의 제조물계속감시의무 위반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Ⅲ. 結 論

이상에서 제조물책임법(법 시행전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분석을 통하여 그 이론과 근거 등을 검토해 보았다.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은 계약책임에서 불법행위책임으로, 불법행위책임에서 다시 무과실책임으로 발전해 왔고⁴⁴⁾, 다른 한편 법원에 의한 사법적 해결방법에서 입법적 해결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 제750조의 과실책임주의에서 벗어나 무과실책임의 일종인 '缺陷責任主義'를 그 요건으로 하고(제3조 제1항 참조), 또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 제조업자 등은,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책사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한, 제조물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고 있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상 제조업자

44) 초기의 계약법에 의한 이론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불완전이행의 법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계약법에 의한 소비자보호(피해)의 법리구성은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업자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불법행위의 법리를 원용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제조업자측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또는 가해행위인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등은 소비자에게 돌아감으로써 불법행위의 법리구성에 의한 소비자보호는 미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놓이게 된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부터 주로 대륙법계통의 국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법리만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조물책임은, 소비자의 충분한 보호를 위하여 제조업자측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법리구성과 함께 무과실책임(제조물의 결함책임)으로의 입법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韓三寅(2004), 85면.

등은 리콜제도의 활용 등을 통하여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없는 일종의 '司法法'의 성격상 '법형성적 기능'을 법원이 담당할 수 밖에 없다(물론 이 법의 흠결 등은 민법에 의한 보충이 가능하기는 하다). 제조물의 범위·제조물책임의 대상·제조물책임의 주체, 그리고 제조물책임의 중요한 요건인 결함의 판단기준·입증책임의 문제 등은 모두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고,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판례이론 중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판례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전부터 시행후인 최근까지도, 그 이론구성이 어떠하든(일응의 추정 법리이든, 아니면 배타적 지배영역설이든 관계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사정하에 제조업자측의 과실을 추정하고 그에 의해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에는 이러한 과실추정이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결함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적용요건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국의 불법행위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가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⁴⁵⁾, 제조업자측의 과실이 추정되는 일정한 사정하에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⁴⁶⁾함으로써 사실상 결함의 추정에 근거하여 인과관계를 추정⁴⁷⁾하는 이론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5) Restatement Third. § 3 cmt. d.

46) 첫째,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시킨 사고가 제조물결함의 결과로서 통상 발생하는 것'이고, 둘째 '그 사고가 당해 사건에서 공급시에 존재했던 제조물의 결함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사고를 유발시킨 제조물 공급시에 당해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함으로써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반증을 통해 입증할 수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결국 결함이 추정된 경우,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추정된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피해자의 손해가 생겼다고 기대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추정된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결함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도 추정된다고 새김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7) James A. Henderson, Jr., Restatement Third, Torts: Product Liability What Hate the ALI Wrought? 64. Def. Couns. J. 501, 513, 1997.